

농림축산식품부

시 정 요 구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징수 소홀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화천군, 고성군

내 용

강원도에서는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전용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농지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부과·통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기내 납부하여야 하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농지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를 하거나 「건축법」 제11조 제1항의 건축허가 등을 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5항, 「농지법」 제34조에 근거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농지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건축허가 부서 등 인·허가부서에서는 농지전용허가 담당부서에 농지전용 여부를 협의하여야 하며,

농지전용허가 담당부서에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허가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을 확인한 후에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협의조건을 부하여

동의하여야 하고, 건축허가부서 등 인·허가 부서에서는 건축허가증 등 교부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체납이 발생된 강원도 본청, 원주시, 고성군 등 7개 시·군에서는 체납자에 대해 납부 독촉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 현황”과 같이 총 20건, 1,167,687,120원의 농지보전 부담금이 체납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현황

부과권자	건수	체 납 현 황(원)			
		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	농지조성비	계
계	20	1,091,469,190	54,459,570	21,758,360	1,167,687,120
강원도	4	682,029,160	34,041,580		716,070,740
원주시	3	130,980,500	6,549,020		137,529,520
횡성군	4	44,911,180	1,103,680		46,014,860
영월군	3	23,939,070	1,196,940		25,136,010
철원군	1	1,850,580	92,520		1,943,100
화천군	4	6,304,830	315,220		6,620,050
고성군	1	201,453,870	11,160,610	21,758,360	234,372,840

* 「농지법」 개정에 따라 2006년부터 농지조성비가 농지보전부담금 명목으로 전환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 원주시장, 횡성군수, 영월군수, 철원군수, 화천군수, 고성군수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1,167,687,120원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 하거나, 체납자에 대해 농지전용 동의조건에 의한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